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8.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14. 천준호의원 외 160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8.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8.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천준호의원)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음. 정부는 1997년부터 5·18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

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음.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이진숙은 2026년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전두환 미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하였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의미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임.

해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 해체(이영훈)”, “이 체제에서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5·18”, “대한민국 정통 주인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주동식)”, “전두환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김용삼)” 등 망국적 발언과 망언을 쏟아냄. 국회의원 이진숙은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난동을 선동한 것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 품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동 결의안은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국회의원의 자격을 소멸시키는 조치인 제명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거쳐 제명이 이루어져야 함.

「대한민국헌법」 제64조¹⁾는 국회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163조²⁾는 국회의원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함.

「국회법」상 징계 절차는 ① 징계의 요구, ②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 ③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④ 본회의 의결, ⑤ 징계의 집행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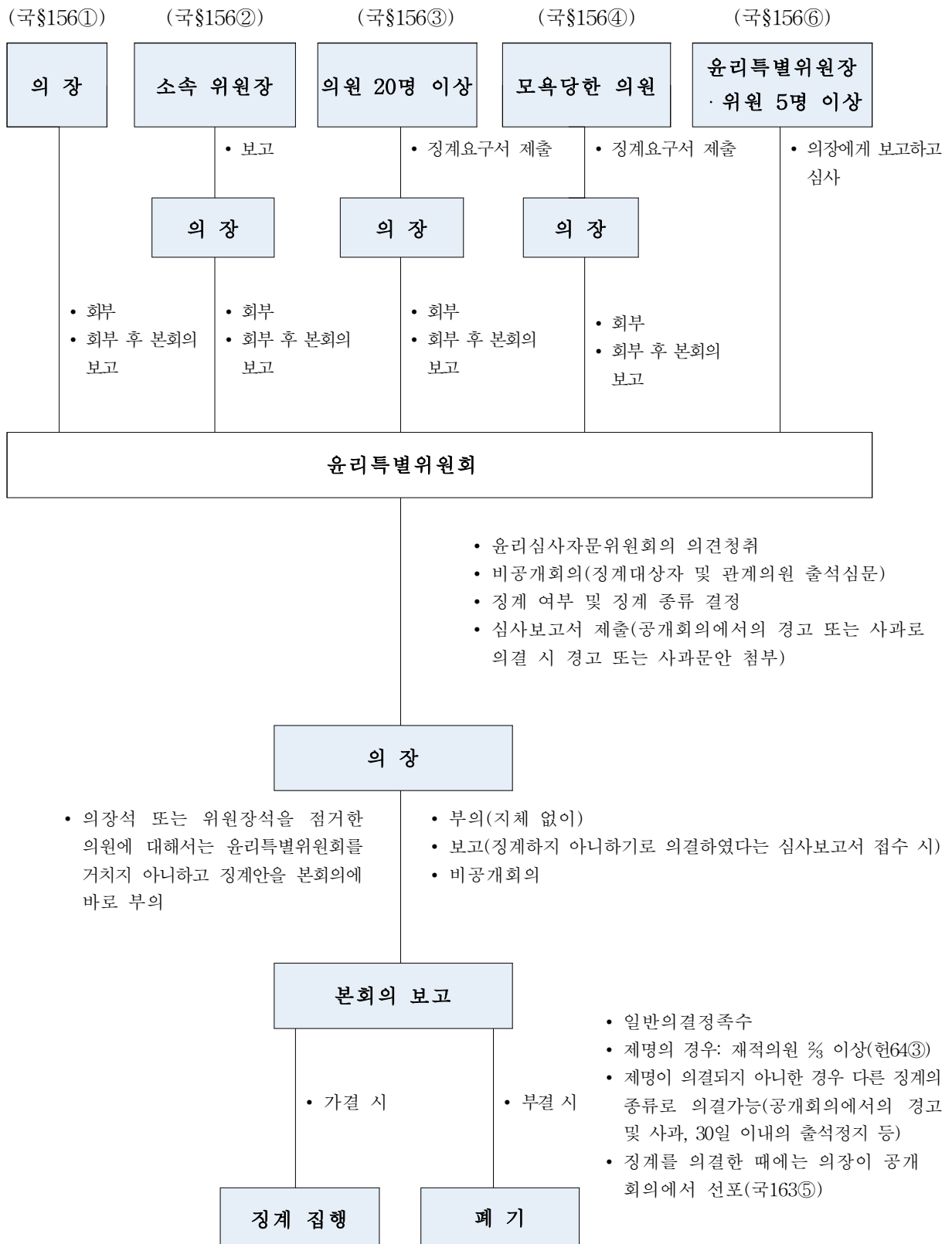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표-1] 국회의원 징계 절차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동 결의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함.

즉, 국회의원 20명 이상 등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제명)를 결정한 후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³⁾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다만, 2026년 8월 현재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통하여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⁴⁾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무기명투표 투표수 17, 찬성 17)

3) 다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데, 이 경우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명시함.

4) 2025. 7. 29.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제안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임.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이진숙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멸칭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폄훼·왜곡을 주도해 온 뉴라이트 대표인사인 이영훈씨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하였음.

특히 참석자들은 해당 행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5·18 민주정신은) 금전에 대한 물질적 욕망”,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이영훈), “대한민국 정통 주인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주동식)”, “전두환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김용삼)” 등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냄.

국회의원 이진숙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고,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민주헌정 체제를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극우세력을 총동원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킴.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음. 정부는 1997년부터 5·18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음.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

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국회의원 이진숙은 2026년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전두환 미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
개포럼」을 주최하였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이념
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의미를 규정한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임.

다. 해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 해체(이영훈)”, “이 체제
에서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5·18”, “대한민국 정
통 주인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주동식)”, “전두환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김용삼)” 등 망국적 발언과 망언을 쏟아냄.
국회의원 이진숙은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성
격과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난동을

선동한 것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